

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서류안내

1/2

※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분은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※ 접수 기간 이후 부적격에 따른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이 불가하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대상	서류발급기준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<input type="radio"/>		신분증	청약자(본인)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 ※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	<input type="radio"/>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청약자(본인)	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)
	<input type="radio"/>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청약자(본인)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포함'으로 발급
	<input type="radio"/>			배우자	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<input type="radio"/>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청약자(본인)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포함'으로 발급
	<input type="radio"/>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청약자(본인)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원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·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)
	<input type="radio"/>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청약자(본인)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"상세"로 발급
	<input type="radio"/>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청약자(본인)	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※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(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)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<input type="radio"/>	복무확인서	복무확인서	청약자(본인)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(※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)
	<input type="radio"/>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 서류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 서류	청약자(본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→ 파견 및 출장명령서(직인날인), 재직증명서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근로자가 아닌 경우 →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(①, ② 모두 반드시 제출) ※ 유학, 연수(근로 및 파견목적 제외)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	<input type="radio"/>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세대원 및 미성년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※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(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)
	<input type="radio"/>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직계존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-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

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서류안내

2/2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대상	서류발급기준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다자녀 가구 특별공급	○	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	청약자(본인)	청약자(본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
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피부양 직계비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주민등록초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피부양 직계존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거나,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'전체포함'으로 발급)
	○	한부모가족증명서	청약자(본인)	청약자(본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 및 자녀	배우자 및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재혼 배우자의 전후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"상세"로 발급
	○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청약자(본인) 또는 배우자	청약자(본인) 또는 배우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(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)과 임신 주차 기재 필수
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
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
제3자 대리인 신청 시	※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				
	○	인감증명서	청약자	청약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본인발급에 한함 / 용도 : 위임용(본인발급)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위임 불가
	○	인감도장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인감증명서와 대조 必
	○	위임장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(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)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신분증	대리인	대리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(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	○	무주택 소명 자료	해당주택	해당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,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"소형·지가주택 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서류	해당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
※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, 공통/추가 서류 외 대리인 신청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.

※ 서류 접수 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'전체포함' 또는 '상세표기'로 발급하셔야 하며,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4.11.26.)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

※ 제출 서류 중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※ 서류 접수 시 자격 검증을 위해 안내 서류 외 추가로 검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,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 하면 폐기합니다.